대학기여도평가규정(3-3-19)

개정일 : 2019. 02. 27.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건양대학교(이하 “본 대학교”라 한다) 「교원인사규정」 제6조의2(교원평가) 규정에 의하여 교원에 대한 대학기여도 평가의 기준 및 절차를 정하고 이를 인사관리에 활용함으로써 대학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① 이 규정의 적용범위는 전임교원 및 비전임교원 중 강의전문교수·연구전문교수·산학전문교수·강의전담교수를 대상으로 하되, 임상의학교원 및 특수목적교원의 평가는 별도로 시행할 수 있다.(개정 2017.6.8.)(개정 2019.02.27.)

② 학장 및 처장급 이상 보직자, 연수자, 파견자, 휴직자 등 규정에 의한 예외자와 평가기간이 3개월 미만인 자 등 총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.

제3조(평가자) ① 대학기여도 평가는 평가 시점 당시의 학과장 및 학장, 처장단 평가로 시행한다.

② 처장단은 총장이 임명한 처장급(산학협력단장) 이상 보직자로 구성한다.(개정 2013.2.28)

제4조(평가원칙) 대학기여도 평가원칙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의한다.

1. 평가자의 주관을 배제하고 합리적 근거에 의하여 평가한다.
2. 신뢰성과 타당성이 보장되도록 평정한다.
3. 피 평가자의 처지 및 상황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한다.

제5조(평가배점) ① 대학기여도 평가는 단과대학의 경우 학과장 평가 30%, 학장평가 50%, 처장단 평가 20%로 평가한다.(개정 2017.6.8.)

② 단과대학에 소속되지 않는 교원의 평가는 해당부서장 70%, 처장단 30%로 한다.(개정 2017.6.8.)

③ 단과대학 소속 학과의 학과장 평가는 학장 70%, 처장단 30%로 한다.(개정 2017.6.8.)

제6조(평가항목) 대학기여도 평가항목 및 평가표는 별표와 같다.

제7조(평가기간 및 시기) ① 근무성적 평가는 당해연도 1월부터 12월 말까지를 대상 기간으로 하여 6개월 단위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.

② 기타 특수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별도의 평가지침에 의거 수시로 평가할 수 있다.

제8조(평가결과 공개) 대학기여도 평가 결과는 공개하지 아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개인이 요청할 경우 다면평가 결과인 최종 점수만을 해당교수에게 공개한다.

제9조(평가결과 활용) 대학기여도 평가결과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교원의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하여 활용할 수 있다.

1. 교원의 승진 및 재임용에 관한 사항
2. 교원의 성과급 책정에 관한 사항
3. 우수교원 포상 및 대외기관 추천에 관한 사항
4. 해외연수자 및 현장학기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
5. 기타 교원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

부　　칙

이 규정은 2012년 7월 26일부터 시행한다.

부　　칙

이 개정규정은 2013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.

부　　칙

이 개정규정은 2017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.

부　　칙

이 개정규정은 2019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.

대학기여도 평가표<처장용>

피 평정자			
소 속		직 급	
성 명		최초임용일	
	평정기간	. . ~ . .	

평 정 자			
소 속		직 위	처 장
성 명	(인)		

평가지표 및 내용		평가기준				
		A (1)	B (0.8)	C (0.6)	D (0.4)	E (0.2)
1. 교수의 의무	교육 및 연구.산학협력, 학생지도 등 교수 본연의 업무에 어느정도 충실한가?	20	16	12	8	4
2. 학생지도 능력 및 실적	학생지도에 대한 열의를 갖고 있으며 지도학생에 대한 문제발생 소지를 없애고 선도하기 위해 노력하는가?	20	16	12	8	4
3. 근무자세 및 협조성	대학 정책 및 관련 업무에 협조적이며 대학 복무 규정을 잘 준수하는가?	20	16	12	8	4
4. 인화관계 및 추진력	교수 및 직원.조교, 학생 등 구성원간의 인화관계가 원만하고 업무추진력이 있는가?	20	16	12	8	4
5. 대학발전 기여도	대내.외적으로 대학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능동적으로 활동하는가?	20	16	12	8	4
계						

대학기여도 평가표<학장용>

피 평정자			
소 속		직 급	
성 명		최초임용일	
	평정기간	. . ~ . .	

평 정 자			
소 속		직 위	처 장
성 명	(인)		

평가지표 및 내용		평가기준				
		A (1)	B (0.8)	C (0.6)	D (0.4)	E (0.2)
입학분야 (20)	1. 입시홍보에 적극적인가?(학부.대학원) 2. 입학충원에 적극적인가?(학부.대학원) 3. 입학 전형 및 선발과정 참여 등 입학업무에 다각도로 노력하는가?	20	16	12	8	4
학생분야 (20)	1. 학생의 면담을 철저히 하여 성공적인 대학생활을 하도록 어느 정도 지원하는가? 2. 재학률 유지(자퇴생 방지 노력, 편입학 기여 등)에 적극적인가? 3. 학교행사 및 교내.외 생활지도에 최선을 다하는가?	20	16	12	8	4
교육분야 (20)	1. 수업준비 및 수업시간 준수는 철저히 하는가? 2. 비교과 교육활동(행사참여, 동아리지도, 방과후 교육 등)에 최선을 다하는가? 3. 교육개혁(교육과정개발, 교수법개발 등)에 능동적인가?	20	16	12	8	4
취업분야 (20)	1. 취업 및 자격증 취득을 위해 방과 후 활동을 어느 정도 하는가? 2. 취업처 발굴 및 학생들의 취업성과를 얼마나 내고 있는가? 3. 취업률 제고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가?	20	16	12	8	4
봉사분야 (20)	1. 교수로서의 직무에 충실하며 대학복무 규정을 잘 준수하는가? 2. 단과대학 정책(보직수행, 위원회활동, 각종회의 참여 등)에 적극적인가 ? 3. 교직원 상호간 또는 행정업무에 협조적인가?	20	16	12	8	4
계						

대학기여도 평가표<학과장용>

피 평정자			
소 속		직 급	
성 명		최초임용일	
	평정기간	. . ~ . .	

평 정 자			
소 속		직 위	처 장
성 명	(인)		

평가지표 및 내용		평가기준				
		A (1)	B (0.8)	C (0.6)	D (0.4)	E (0.2)
입학분야 (20)	1. 입시홍보에 적극적인가?(학부.대학원) 2. 입학충원에 적극적인가?(학부.대학원) 3. 입학 전형 및 선발과정 참여 등 입학업무에 다각도로 노력하는가?	20	16	12	8	4
학생분야 (20)	1. 학생의 면담을 철저히 하여 성공적인 대학생활을 하도록 어느 정도 지원하는가? 2. 재학률 유지(자퇴생 방지 노력, 편입학 기여 등)에 적극적인가? 3. 학교행사 및 교내.외 생활지도에 최선을 다하는가?	20	16	12	8	4
교육분야 (20)	1. 수업준비 및 수업시간 준수는 철저히 하는가? 2. 비교과 교육활동(행사참여, 동아리지도, 방과후 교육 등)에 최선을 다하는가? 3. 교육개혁(교육과정개발, 교수법개발 등)에 능동적인가?	20	16	12	8	4
취업분야 (20)	1. 취업 및 자격증 취득을 위해 방과 후 활동을 어느 정도 하는가? 2. 취업처 발굴 및 학생들의 취업성과를 얼마나 내고 있는가? 3. 취업률 제고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가?	20	16	12	8	4
봉사분야 (20)	1. 교수로서의 직무에 충실하며 대학복무 규정을 잘 준수하는가? 2. 학과발전을 위하여 어느 정도 적극적이고 능동적인가? 3. 교직원 상호간 또는 행정업무에 협조적인가?	20	16	12	8	4
계						